

미국장로교의 연방 단체 면제 결정에는
누가 해당되며 그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해당되는가?

미국장로교는 국세청 (이하 "IRS")으로부터 단체 면제 결정 (이하 "단체 면제")을 받았다. 1964년 1월 31일에 처음 단체 면제 결정을 한 후, IRS는 이 결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결정을 해왔다. 단체 면제 결정에 따라 미국장로교와 그 관련 단체는 미국 연방세법 501(c)(3) 조항(이하 "조항")에 따라 연방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미국장로교 총회는 매년 출판되는 총회 회의록 (이하 "회의록")에 단체 면제 결정과 관련해 혜택을 받는 관련 조직들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 미국장로교의 법률 및 위험 관리 서비스 사무소, A-코어퍼레이션의 행정 서비스 그룹은 미국장로교 총회 정서기를 대신하여 단체 면제 결정을 관리한다.

다음 목록은 단체 면제 결정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목록이다.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 개별 교회, 회중, 당회,
- 노회,
- 대회,
- 총회,
- 위 조직의 최초 또는 주요 법인(예: 제일 장로교회, Inc.) 및
- 위 조직의 비법인 프로그램 또는 기능.

교회/당회, 노회 또는 대회에서 연방 면세 자격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미국장로교 A-코어퍼레이션의 법률 서비스 사무소의 다음 직원으로부터 서신을 받을 수 있다.

Samantha Lund, Legal Services
(888) 728-7228-Ext. 5020
samantha.lund@pcusa.org

또는

Rebecca Rayner, Legal Services
(888) 728-7228-Ext. 8021
rebecca.rayner@pcusa.org

미국장로교 유관 기관이지만 별도로 설립된 다른 단체는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장로교 연방 단체 면제에 포함되기 위한 절차*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다른 단체가 미국장로교 단체 면제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이 문서는 A-코어퍼레이션의 법률 서비스 부서의 다음 직원에게 받을 수 있다.

April Davenport, Legal Services
(888) 728-7228-Ext. 5350
April.Davenport@pcusa.org

또는

Rebecca Rayner, Legal Services
(888) 728-7228-Ext. 8021
rebecca.rayner@pcusa.org

마지막으로,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된 기관은 자체 고용주 식별 번호를 보유해야 한다. 단체 면제 결정에 사용된 고용주 식별 번호(23-6393377)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음은 단체 면제 결정에 관해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과 답변이다:

1.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된다는 것은 포함된 조직이 규정 501(c)(3)항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연방 소득세, 증여세 및 상속세 목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조직은 연방 실업세도 면제된다. 그러나 개별 주에서는 특정 면세 기관에 대해 연방 세금이 면제되더라도 실업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직들은 주 실업세에 대한 책임 유무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연방 단체 면제 결정에는
누가 해당되며 그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해당되는가?

2. **연방 소비세는 어떻게 되나요?**일반적으로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되는 것은 연방 소비세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세금 면제는 매우 제한적이다. 조직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주세는 어떻게 되나요?**일반적으로 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되는 것은 주 또는 시 소득세나 재산세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해당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 또는 지방 세무 당국에 별도의 면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세 또는 지방세 면제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가능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4. **사회보장세는 어떻게 되나요?**단체 면제 결정에 포함된 모든 조직은 각 일반 직원에 대해 연방보험기여금법(FICA)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